

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74 |
|----------|-----|

2026. 2. 9.

도시교통위원회

1. 수정이유

장애인, 다자녀가정,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,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, 다자녀가정, 임산부 감면사항 규정 (별표 1, 별표 1의2)

- (원안) 50%감면 장애인, 다자녀, 임산부 (별표 1, 별표 1의2)

→ (수정)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% 감면

장애인, 다자녀, 임산부 (별표1, 별표1의2)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표 1과 별표 1의2 50%감면 중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, 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(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),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(모자보건수첩,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)를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% 감면으로 한다.

수정조문대비표

| 개 정 안 | | 수 정 안 | |
|-----------|--|---|--|
| 50% 감면 | <p>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</p> <p>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(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),</p> <p>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(모자보건수첩, 임신부자동차표지 등 임신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)</p> |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 시간 50% 감면 | <p>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</p> <p>「저출산·고령화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(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),</p> <p>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(모자보건수첩, 임신부자동차표지 등 임신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)</p> |

※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한다.